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4. 7.

목 차

Presentation
Contents

- I.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요_2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_3
 - 2. 주요 개정 내용_5
- II. 연구개발비 기본 점검 사항_10
 - 1. 한도 및 비율 점검_11
 - 2. 기타 중점 점검_12
- III.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계상기준_14
 - 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_15
 -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_21
 - 3. 기관 유형별 계상기준_51
 - 4. 협약내용 변경_55
- IV.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_56
 - 1. 연구개발비 정산절차_57
 - 2. 연구개발비 정산기준_58
- V. 불인정 사례_59

Chapter

Presentation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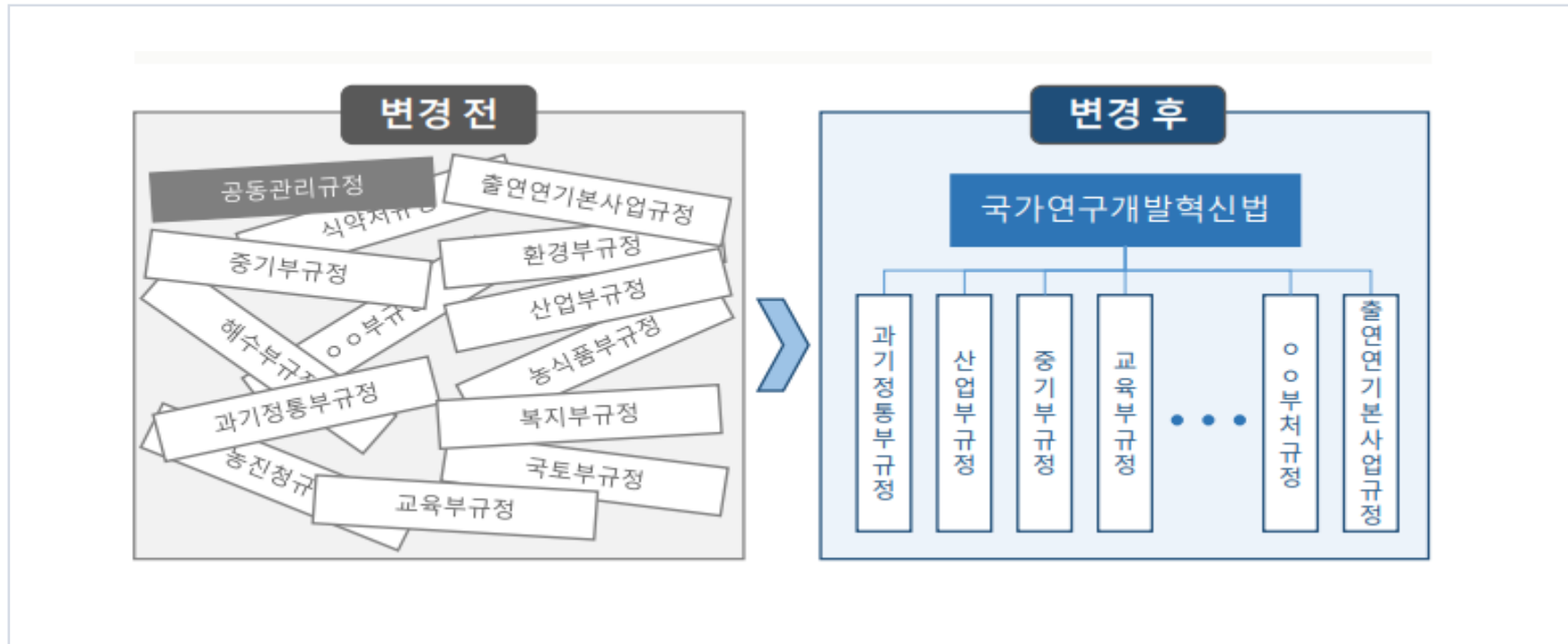
I.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요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통합 및 체계화

부처별 상이한 규정에 따른 연구현장 혼선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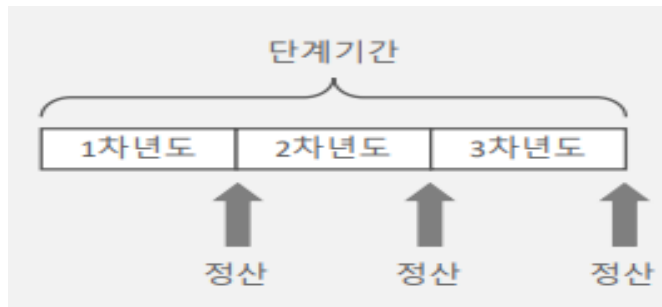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연구개발비 정산 주기 변경

연차정산이 폐지되고, 단계별 정산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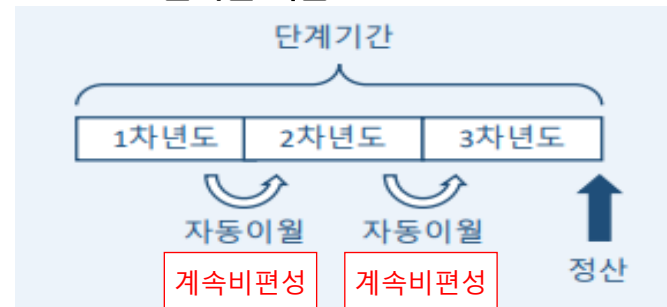
변경 전

- 연차별 정산 실시



변경 후

- 단계별 정산 실시!
 - 단, 연차별 집행내역 등록 필수!
상시점검에 따른 회계법인 수수료로 연차별 지급!



2. 주요 개정 내용(2022년, 2022.01.01)

구분	개정 내용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사용 가능한 비용 범위 확대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경우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의 경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후까지 사용 가능
보안수당 등 신설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인건비의 3%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 계상 가능
현금인건비 대상 교원 범위 명확화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경우 직장가입 여부에 불구하고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
영리기업 연구실운영비 수정사용 가능 규정 신설	중앙행정기관 장의 사전승인을 득하는 경우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사용 관리계획 변경 가능
사전 승인 대상 추가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계획 변경도 사전승인 대상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전승인 대상
영리기업 현금인건비 비율 한도 삭제	총전 연구비 현금 50% 이내 한도 삭제
수행기관 간 거래 중 일부 거래 허용	수행기관 간 거래라도 아래 비용은 예외적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기관 공동활용 시설장비 사용비용 • 시험, 검사, 분석 비용
연구수당 단계 이월 금지 명확화	해당 단계의 연구수당을 다음 단계의 연구수당에 포함하여 사용 금지

2. 주요 개정 내용(2023년, 2022.12.21)

구분	개정내용
해외 연구자 유치지원비 추가 (연구활동비)	해외 소재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p>[계상조건](모두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면서 연구과제 참여 -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관계 아닐 것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기본사업의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같음)
연구수당 증액 불가 관련 기준 시점 변경	(중전) 협약 체결 당시 ⇒ (개정) 연구개발과제(단계가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
연구수당 증액 가능 조건 신설	<p>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약을 변경한 후 증액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
학생인건비 단가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과정 : 1,000,000원 ⇒ 1,300,000원 - 석사과정 : 1,800,000원 ⇒ 2,200,000원 - 박사과정 : 2,500,000원 ⇒ 3,000,000원
연구시설·장비비 현물 대상 추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구입·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추가

2. 주요 개정 내용(2023년, 2022.12.21)

구분	개정내용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변경 시 사전 승인 대상 추가	<p>중전 사전 승인 대상에 아래 사항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기관)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 감액 - 단계기간 연구수당 총액 증액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 변경 - 단계기간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 증액(환율만 변동된 경우 제외)
	<p>중전 사전 승인 대상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기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 원래계획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임차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기한	(중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 (개정)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2. 주요 개정 내용(2024년, 2023.12.28)

구분	개정내용
보안수당 지급범위 확대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뿐만 아니라 연구근접지원인력도 지급범위에 포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위한 신청 서식 신설 및 신청 시기 명확화	<p>아래 중앙행정기관 인정을 위한 신청 서식 신설(별지 2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 40% 초과 •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비용의 계상 •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40% 초과 •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계상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 등 <p>협약 체결 이후 신청사항 발생 시에도 추가 신청 가능</p>
연구개발비 계상을 위한 자체규정 계상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안됨
회의비 식대 계상 조건 신설	<p>사전 내부결재 완료된 회의에 한하여 식대 계상 가능</p> <p>(*)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p>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정 사항 추가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비용의 계상(출연연 기본 사업 제외)
비공무원 출장비 계상 기준 변경	<p>기관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큰 금액에 따라 계상</p> <p>(기관 자체규정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실비 계상 불가))</p>
현물 회수액 산정방식 개정	협약으로 정한 현물부담액 중 적정사용 현금연구비 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 금액

[참고] 회의비 식대 개정내용 적용 상세

□ 적용시기 : 24년 12월 1일부터 적용

□ 사전 내부결재 완료 관련

- 사전 : 회의 시작 시점 또는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시점(카드 결제시점 등) 중 늦은 시간까지보다 이전(사전에)
- 결재 완료 : 연구책임자의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기안 또는 내부 연구비시스템을 통한 식비 사용 신청도 포함
- 결재문서 내용 :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또는 명단) 등 포함
- 사전 내부결재 내용 변경 : 회의록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내부결재문서의 사후 수정을 통해 변경 내용과 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증빙서류 : 회의비 식대는 사전 내부결재 문서는 필수(*)로 구비해야 함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선택 구비하는 것은 회의비 중 식비를 제외한 회의비(예,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등) 사용 건에만 적용

Chapter

Presentation
Contents

II. 연구개발비 기본 점검 사항



1. 한도 및 비율 점검

▣ 한도 또는 비율 준수 여부 점검

검토 항목	적정 기준
간접비	직접비(현물제외) 10% 이내(영리기관)
	직접비(현물제외) 고시비율(또는 17%) 이내(비영리기관)
	예산 범위 이내(또는 고시비율내 증액 시 사전승인)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현금 및 현물 포함)의 40% 이내
연구수당	인건비의 20% 이내
	단계 예산 범위 이내(연구개발비 총액 증액 등으로 연구수당 증액 시 전문기관 사전승인)
개인별 연구수당	수행기관 연구수당의 70% 이내
인건비 계상률	100% 이내(출연연 등 130% 이내)
연구수당(직접비 연동)	직접비 사용비율의 20%p 가산 범위 이내
간접비(직접비 연동)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해당 비율 이내

2. 기타 기본 점검

▣ RCMS/이지바로 등록정보 및 기본서류 점검

검토 항목	적정 기준	
참여연구원 현황 정리	RCMS/이지바로 참여연구원 현황표에 따라 인건비 정산 ⇒ 현황표(참여연구원 등록 여부, 참여율, 참여기간 등) 오류 시 인건비 불인정	
사용일자 확인	사용일자(*)가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전 또는 이후인지 확인 필요 (*) 사용일자 : 연구개발 결과에 투입 또는 반영된 일자(거래처 이체일자 X) 단계기간 내 입고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단계기간 종료 전 미입고 예상 시 이월신청 필수) (*) 연구시설장비비, 소프트웨어활용비의 경우 2개월(또는 1개월) 이내	
매입부가가치세	환급가능한 매입부가가치세는 실제 환급여부에 불구하고 실적에서 제외	
수행기관 간 및 특수관계자 간 거래	수행기관 간 거래는 시험분석료 등을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음 특수관계자(주주, 임직원 등) 간 거래는 인정되지 않음(연구비 유용으로 제재대상 주의)	
현금인건비 총액 변경	중액 사용 시 전문기관 사전승인 필요 감액 후 타용도 전용 시 전문기관 사전승인 필요	영리기관
신규인력 현금인건비	감액 후 타용도 전용 시 전문기관 사전승인 필요 (*) (산업부) 현금인건비 총액이 유지되는 경우 통보 대상	
청년인력(의무) 현금인건비	해당연차 청년인력(의무)의 고용을 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자의 인건비(현금) 전용 불가 (*) (산업부) 전용 가능	
연차별 현금인건비 변경	(산업부) 연차별 현금인건비 변경 시 전문기관 사전 승인 필요	
인건비 자계좌이체 시기 주의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 자계좌 이체 금지 (先자계좌이체 금지) (*) (산업부) 일괄 흡수 후 3주 내에 개별 지급을 완료하고 처리 증빙을 제출한 경우 인정	
연구실운영비 (범용성/사무용 비품류)	협약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 · 관리 계획"에 명시하여 제출됐는지 확인 필요(또는 수정 후 전문기관 승인 여부)	

2. 기타 기본 점검 [참고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가능하지 않은 매입부가가치세는 연구개발비로 사용 가능

[참고] 환급가능하지 않은 매입부가가치세 유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불명분 매입세액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불명분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영업용이 아닌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 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 및 이들 업종과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도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영업용이 아닌 것(예, 출장용 승용자동차)
 - (*) 승용자동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 정원 8인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되,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것은 제외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예, 면세사업자의 면세물품 등 판매를 위한 지출액)
-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
-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 제외) ⇒ 택시, 버스, 항공, 철도
 -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 ✓ 성형외과
 - ✓ 수의사
 - ✓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Chapter

Presentation
Contents

III.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연구개발비 예산 구성

비목	세목	용도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자 및 비영리기관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 급여충당금
	학생인건비	대학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입 및 임차비용과 그에 따른 부대경비
	연구재료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결과물에 직접 부속되는 재료 및 시약, 시험제품 제작비용 등
	연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각종 경비
	연구수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보안수당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그 기관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및 연구개발능력성과급 등
	연구지원비	기관공통비용, 사업단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등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세목간 변경 : 통보성 변경(사업관리시스템 예산 변경)
- 세목내(세세목) 변경 : 연구기관 자체변경 절차로 변경(예, 회의비↔전문가활용비, 여비↔야근식대 등)
- 비목간 변경 : (직접 ⇒ 간접) 간접비 고시비율 범위 내까지 전문기관 사전승인 필요
(간접 ⇒ 직접) 통보성 변경(사업관리시스템 예산 변경)

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인건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제외, 출연연 등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 제외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 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학생인건비

- 대학, 특정연, 정부출연연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 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 · 장비 구입 · 설치비: 연구시설 · 장비의 구입 · 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연구시설 · 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 · 장비의 임차비
- 연구시설 · 장비 운영 · 유지비: 유지 · 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 · 장비를 다른 기관으로 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 ·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 · 시설의 매입 · 임차 · 조성비, 설계 · 건축 · 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 · 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 · 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 · 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연구활동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 · 특허 · 표준 정보 조사 · 분석, 원천 · 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비용 등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회의 · 세미나 개최 비용
-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 · 네트워크의 이용료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비영리기관)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 비용
-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 · 훈련비, 학회 · 세미나참가비, 야근(특근)식대
-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 : 외국 소재 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성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 · 조정, 자문, 관리비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 · 복사 ·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보안수당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간접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영리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 계상 불가)
(*) 연구지원인력 : 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 사업단 운영비
- 기반시설 · 장비 구축 · 운영비 : 대학의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 필요 비용(직접비 미계상 시)
-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 · 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비 등
- 연구활동지원금 : 비영리기관의 학술도서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체험활동 등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유지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 불인정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 주류 등 유흥성 비용
- 동일한 비용이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는 비용
-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 불인정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 비용(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제외)
 - ✓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 연구개발기관 내 또는 수행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 나)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분원 간 발생 비용(중앙행정기관 인정경우만 해당)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 인정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비 사용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연구개발비로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 · **검수**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 연구수당
 - ✓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 ✓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로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참고] 정규중방 수취의무 면제거래

- 농어민(법인제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읍면소재(도농복합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대상이 아닌 경우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연구개발비에서는 3만원 이하라도 정규중방 수취의무](#))

[참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모든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 합산 기준)

[참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모든 면세법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인 과세면세겸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인 개인면세사업자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인건비

● 공통사용기준

- 정부출연기관(사용기준 제39조) 및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9조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 제3항에 따른 연(월) 급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이며,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됨

● 인건비 구성항목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하는 1년간의 급여(연구수당, 연구개발능력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 총액
-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참고] 인건비 관련 법령 및 규정

구분	관련 법령 및 규정
연구참여자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연구참여자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타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타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 및 강사 포함)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 비영리기관만 계상가능하며, 영리기관은 계상불가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인건비

급여총액 100만원,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 20만원인 경우 A과제에서 인건비를 40만원(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 제외),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을 20만원 각각 계상하였을 경우 총인건비계상률은?

[종전(참여율)]

- A. 인건비계상액 $60 = 40 + 20$
- B. 인건비계상 기준금액 $120 = 100 + 20$
- C. 참여율 = $A/B = 60/120 = 50\%$

[현행(인건비계상률)]

- A. (인건비계상률 산정을 위한) 인건비계상액 40
 - B. 인건비계상률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 100
 - C. 인건비계상률 = $A/B = 40/100 = 40\%$
- ※ 인건비계상액 = 60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 계상 방법은?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계상 가능
 - 협약체결 당시 참여연구자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 규모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하되, 이후 인건비계상률과 연동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음. 이는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임
- ※ 다만,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 계상·사용불가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인건비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대학의 경우 자체규정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해도 되는가?

- 대학의 경우에도 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교원의 연봉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단가 적용을 허용함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에서 지급 불가
-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인건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전에 계획 및 반영하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퇴직급여충당금의 미적립 등)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인지?

-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현금, 현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가 있을 경우 연구수당 계상 시 이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임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인건비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는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를 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아래 학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학생인건비계상률]

해당 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7조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최소 기준)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 월 1,300,000원
-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 통합과정 : 상기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금액

-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 초과 불가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일 전 입력
-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금액
 -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 ✓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시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상 불가
- 학생연구자가 연구 수행 기여도를 인정받아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기술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과제관리시스템에 참여과제의 참여연구자 등록 필요
- 기관장,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보장, 처우 개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공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는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중 선택 지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불필요
- (*) 학생연구자의 행정 불편 경감을 위한 것으로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장려하는 것이 아님.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장인 학생의 학생인건비 지급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직장인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는 기존 전일제 학생을 위한 학생인건비 외에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하길 권고함
- 박사 후 연구자의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인건비로 지급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구분	증명자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과제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증빙(학생인건비 정산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학생연구자별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는 내부 관리 필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비대상 과제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 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 증명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 (공통)

- 대학은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수료등록, 휴학 상태 확인 필요
-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시 재학증명서를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 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 ('24.1월 기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체 목록 (가나다순)

구분	기 관 명	
	연구책임자단위	연구개발기관단위
대학 (58개)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 금오공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전남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양대	가천대, 세종대, 순천향대, 아주대, 인하대, 전북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한밭대, 한전공대
출연(연) (3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특정(연) (4개)	-	DGIST, GIST, KAIST, UNIST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가 아닌 타 자원(민간과제 등)으로 받는 인건비는 학생 연구자의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 학생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또는 학생인건비)가 아닌, 타 재원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 BK21 장학금, 학술지원사업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3항에 따라 지급 가능함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졸업예정자가 졸업하는 월의 연구참여기간과 학생인건비계상률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졸업일 이후에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아니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 연구참여기간은 졸업일까지로 작성 필요
- 다만 졸업월의 말일이 아닌 일자에 졸업하더라도 해당 월 학생인건비계상률 100%로 계상하여 졸업월 말일까지의 연구 참여에 대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즉, 졸업월의 학생인건비를 졸업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조정할 필요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도 학생연구자에 해당함. 다만, 별도의 연구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학교는 각 학교의 자체 인정 기준(수료 후 등록생, 수료 후 논문지도 과정으로 학기 등록한 과정생 등)에 따라 연구생으로 보고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 지급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수료등록제 또는 이에 유사한 제도로 학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학생연구자로 볼 수 있으며 학생연구자로서 연구 참여 및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함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학사-석사-박사과정 사이의 공백 기간 중에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사이 졸업일과 입학일 사이의 공백 기간 중 학생인건비 지급은 현행 학위 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 과정 진학이 확정된 학생연구자가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할 경우 가능
※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으로 상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었음을 확인 가능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도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 혁신법과 그 하위규정에서는 군사훈련 기간 동안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이 경우, 해당 월에 일할계산 없이 연구참여확약서에 기재한 지급액만큼 모두 지급할 수 있음
※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가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에 참여 가능한지?

- 학생연구자는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받는 인건비가 총인건비계상률 100%(소속 대학 계상기준 100%)에 달하면 추가 연구 참여 시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연구 참여 가능함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기관이 보유·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한 연구시설·장비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 1억원 이상 연구장비 구입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구입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 필요
-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시 현금 계상 가능**

(*)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구분	기한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출연연 등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

연구재료비

- 연구기관이 보유·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한 연구재료비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 (지식재산창출활동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비는 불가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처에서 인정하는 경우 초과 가능(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회의비 식대) **회의비 중 식비 계상 불가**. 단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 가능**
 - ✓ 10만원 초과 회의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와 영수증,
 - ✓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회의개요(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와 영수증 구비 필요
- (출장비) 다음에 따라 계상 가능

구분	기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공무원이 아닌 경우	기관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큰 금액에 따라 계상 (기관 자체규정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실비 계상 불가))

-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함
- ✓ 출장기관에서 식대를 제공할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계상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 (SW활용비)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사용할 수 있음

구분	기한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출연연 등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

- (연구실운영비) 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구매절차 준수 필요
- (연구인력지원비)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과제와 무관한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평일 점심 식대 등 계상 불가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 (해외 연구자 유치지원비) 아래 요건 모두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
 - ✓ 단계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면서 연구과제 참여
 - ✓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관계 아닐 것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기본사업의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참고] 비영리기관의 전문가활용비 사례

수행기관 간 전문가활용비는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유형	전문가 소속부서(*)	전문가 활용비 사용여부
비영리기관 상호 간 전문가 활용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O
비영리기관 내 전문가 활용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대학의 경우 연구실)	O

(*) 대학의 경우 연구실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연구활동비

파견 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 그 외의 사업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면 계상 가능(24년부터)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

- 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식비는 사용이 가능함. 다만, 온라인 회의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어느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자체규정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검사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에 사용이 가능함
- 만약,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사용을 위한 목적의 별도 자체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용도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 적용이 가능한 자체규정(예: 용역계약 등에 적용하는 자체규정)이 있다면 같음하여 적용 가능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연구수당

- 수정인건비(인건비(현물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의 20% 범위내에서 계상하되, 연구개발과제(단계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 시작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 불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약변경 후 증액 가능
 - ✓ 단계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 ✓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
-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기관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지급하되, 한명의 연구자에게 70% 이상 지급 불가(참여연구자이 1명인 경우는 제외)
- 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p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연구수당은 정산시 회수(직접비사용비율 계산 시 현물 계상금액 제외)
- 해당 단계의 연구수당은 다음 단계로 이월 불가

보안수당

-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인건비의 3%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 가능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연구수당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연구개발기간 중 중도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 연구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말함)중 1차년도에 연구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년도부터 1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전체 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연구수당 70%이상을 지급할 수 없음

연구수당 지급을 위하여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일부 참여연구자에게만 연구수당을 지급 가능한지?

- 지급 가능하나,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위탁연구개발비

- 원칙적으로 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계상
-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것을 연구비 사용으로 간주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산 실시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인력지원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 모두를 포함하여 연구기관 자체성과평가 실시 후 지급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로 계상

연구지원비

- 기반시설 · 장비 구축 · 운영비는 대학만 계상 가능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상
-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출연기관 : 1% ~ 2%, 기타 기관 : 2% 이하
- 연구활동지원금은 비영리기관만 계상 가능

성과활용지원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을 원칙으로 하
되, 최장 10년까지 계상 가능

직접비 사용비율 연동

-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아래 계산금액 회수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간접비비율의 조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에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정해진 간접비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상향 조정된 간접비고시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간접비비율을 협약 체결 당시의 간접비비율보다 낮게 정하고자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간접비 증액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가능(사전승인사항)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간접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 학생연구자와 산학협력단 직원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모든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을 평가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연구자 역시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산학협력단 직원 또한 연구지원인력에 해당한다면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흡수하게 될 경우 부당집행금액에 해당되는지?

-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비 사용이 원칙이므로, 연구개발비 회수대상임

연구개발과제에서 흡수한 간접비를 과제종료 이후에도 운영예산으로 사용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43조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서 흡수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비는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후에도 운영 예산(간접비 사용용도)으로 사용가능함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참고] 직접비 사용비율 관련 항목 비교

구분	항목	통합이지바로 적용 수식	통합RCMS 적용 수식
연구수당	연구수당 지급비율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사용금액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총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사용금액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총액
	직접비 사용비율	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연구수당 해당금액 제외) 사용금액 / 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연구수당 해당금액 제외) 총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간접비	간접비 사용비율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사용금액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총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사용금액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총액
	직접비 사용비율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 및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 / <u>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u>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사용비율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 및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금액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액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금액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참고] 연구개발비 항목별 직접비 내 현물 포함 여부

연구개발비 항목	제한기준	직접비 내 현물 포함 여부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 40% 이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2항)	O
연구수당	수정인건비 20%이내 (인건비(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포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1항)	O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40%이내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제1항)	O
간접비	수정직접비 × 간접비 고시비율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제9호)	X
연구수당 불인정	직접비 사용비율 20%초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6항)	X
간접비 불인정	직접비 집행비율 50%이하 시 집행비율을 초과한 금액 (시행령 제26조제5항제3호)	X

3. 기관 유형별 계상기준

구분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간접비 비율	기관별 고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별 고시비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별 고시비율 17% 	10%
현금인건비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p>(*)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의 적용받는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p> <p>(*)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겸임/초빙교원 등</p> <p>[현금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받는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직장가입자인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 신규인력 전문사업연구자 신고 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연구개발성과 국가소유 과제 참여연구자 중앙행정기관 장 인정 참여연구자
현금인건비 한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연구비 현금의 50% 이내 삭제)
총인건비계상률	연평균 130% 이내 (근접인력 100% 이내)	월 100% 이내 (근접인력 100% 이내)	월 100%(*) 이내 (근접인력 100% 이내)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130%	월 100% 이내 (근접인력 계상 불가)
학생인건비 총인건비 계상률	월 100% 이내	월 100% 이내	N/A	N/A
내부전문가 활용비	가능(동일부서 제외)	가능(동일 연구실 제외)	가능(동일부서 제외)	불가능

3. 기관 유형별 계상기준 - 영리기관

인건비

- 영리기관의 장이 참여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계좌이체가 허용됨
 - ※ 다만,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여서는 아니 됨
-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를 협약 체결시 계획 보다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부처 사전승인 필요
-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조건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개시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인력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를 국가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 현금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3. 기관 유형별 계상기준 - 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과제 시작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또는 과제 시작 후 구입·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시설·장비비는 구입가의 20% 내에서 현물로 계상
- 현물로 계상한 연구시설·장비는 구입일이 과제 시작일 5년 이내,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 계상 연도 말 일 이후인 경우만 가능
-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여러 과제에서 현물 계상액의 합이 구입가 초과 불가

연구활동비

-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관 유형별 계상기준 -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 영리기업 연구실 운영비

영리기업 연구실 운영비

소모성 사무용품

종이, 펜, 잉크 등 소모성 사무용품

사업계획서 반영 여부 관계없이
필요 수량 구매 시 인정

연구실 운영 소모성 비용

실험실 세제, 장갑 등

계상 불가

비소모성 물품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냉난방 및 환경유지 기기·비품

협약체결 당시 사업계획서 반영 또는 별지서식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계획변경(*) 시 사전승인 필수

(*)계획변경

- ✓총 금액이 증액
- ✓품목이 변경
- ✓특정 품목의 수량 증가

4. 협약내용 변경

연구개발비 협약내용 변경

사전승인 또는 통보 (단, 사업비 산정기준 초과 불가)

사전 승인

-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 연도별 정부출연금 또는 주관기관 민간부담금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
- **간접비 총액 증액(고시비율 내 한정)**
-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변경
 - ✓ 인건비 총액 변경
 - ✓ 신규인력 현금 계상 인건비 감액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 ✓ 계획에 없던 연구시설·장비 새로 구입 및 임차
 - ✓ 계획된 연구시설·장비 변경 구입 및 임차(환율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 제외)
 - ✓ 계획된 연구시설·장비 미구입 및 미임차
 -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계획 변경
- 위탁연구개발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및 변경(환율변동 제외)
- **해당 단계의 사업비(직접비) 이월**
-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연구수당 총액) 증액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
-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 총액 증액(환율변동으로 금액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사전 통보

- 참여연구자 변경
- 협약 내용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기타 사업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Chapter

Presentation
Contents

IV.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1.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구분	전(~20년)	후(21년~)
정산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차별 정산 - 연차별 사용실적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별 또는 단계별 정산 - 과제별 또는 단계별 사용실적 보고
정산 시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 (착수)

2.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 간접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를 각각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사용으로 인정
 - * 간접비는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만, 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만, 연구시설·장비비는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기관의 통합관리연구시설·장비의 경우에만 한정

■ 연구개발비 정산의 특례

- 다음의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음
 - ✓ 기본사업
 -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Chapter

Presentation
Contents

V. 불인정 사례



1. 인건비

사례

- 홍길동연구원은 월급여 3백만원으로 과제에 12개월 참여
- 인건비 계상률 1~6월 40%에서 7~12월 100% 변경 지급
(인건비 지급액 : 120만원*6월+300만원*6월=2,520만원)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 변경 등록 누락
(RCMS 인건비계상률 1~12월 40%)

- (주)○○는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인건비 예산으로 3,600만원 편성(1~12월)
- 10월초 신규채용되어 3개월 인건비 900만원 지급
- 신규인건비 잔액 2,700만원 통보성 변경으로 재료비 전용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인건비 지급 한도액 = 1,440만원
(300만원*40%*12개월=1,440만원)
※ RCMS에 등록된 인건비계상률로 정산 원칙

[혁신법 매뉴얼 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 영리기관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 ✓ 산출한 인건비계상률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기관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함

- 재료비로 전용한 신규인건비 잔액 2,700만원 불인정
※ 영리기업 신규인력 현금인건비 감액은 사전 승인 대상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제1항제4호]

- ✓ 영리기관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1. 인건비

사례

- (주)○○는 연구인력 보강을 위하여 △△대학의 홍길동 부교수를 외부참여연구원으로 투입
- 홍길동 부교수에게 외부인건비 현금으로 월 300만원씩 12개월 지급

- (주)○○는 과기부 과제를 수행 중이며, 급여지급일은 매월 25일임
- X3년 3월 급여지급을 위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3월24일 자계좌이체로 인건비 1천만원 선이체받은 후
- X3년 3월25일 급여 지급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외부인건비로 사용된 3,600만원 불인정
- ※ 외부인건비는 현금인건비 지급가능 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 가능

[혁신법 매뉴얼 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Q&A]

-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인건비 1천만원 복원조치
- ※ 영리기관 경우 급여지급 이전 인건비 선자계좌이체 금지
- ※ 자금 유용 목적의 선자계좌이체 여부 중점 점검 대상
- ※ 유용 여부 점검 결과 문제 없을 경우 재집행 가능

[혁신법 매뉴얼 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 영리기관의 장이 참여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계좌이체가 허용됨
- ※ 다만,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여서는 아니 됨

2. 연구시설·장비비

사례

- 소부장지원사업(연구개발기간 X3.1.1~X3.12.31)을 수행하고 있는 (주)○○는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하기로 계획
- 현지물류 사정으로 선적이 지연되어 X3.12.2에 수입신고 후 입고, 검수처리

- ○○대학교는 과제 수행 중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장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매키로 함
- 해당 장비는 공급대가 기준 2,800만원(설치비 500만원 별도)이므로 3천만원 이상이 아니므로 사전승인 대상 협약변경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승인 절차 없이 구매 함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연구개발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검수완료되지 않은 장비비 사용액 불인정
 - ※ 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완료 필수
 - (*) 산업부 : 전문기관 사전승인 조건 하에 1개월 전까지 가능

[혁신법 매뉴얼 제5절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함

- 연구장비 구입 및 설치비 3,300만원 불인정
 - ※ 협약변경 관련 사전승인 대상인 3천만원의 기준은 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제1항제5호]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등

2. 연구시설·장비비

사례

- 신기술사업(연구개발기간 23.1.1~23.12.31)을 수행하고 있는 (주)○○는 보유 중인 장비를 현물로 부담하기로 함
- (주)○○는 해당 장비를 16년1월1일 1억원에 구입
- 내용연수 10년으로 23년초 기준 장부가액 3천만원으로 현물출자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현물부담액 3천만원 불인정 및 현금으로 3천만원 반납
- ※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여야 함

[사용기준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

- ✓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구입·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 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 이어야 한다.
- ✓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1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재료비

사례

- (주)○○의 홍길동 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앞두고 연구재료비 예산 1천만원이 소진되지 않은 점을 확인
 -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1천만원의 연구재료비 예산을 소진하기 위하여 거래처 (주)△△에게 종료일 전 1천만원의 연구재료 납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 후 계좌이체
 - (주)△△으로부터 납품받은 재료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이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연구에 투입
-
- 주관기관 (주)○○와 공동연구개발기관인 (주)△△는 연구개발과제 전부터 상호 주된 거래처임
 - (주)○○는 시작품제작을 위하여 평소와 같이 (주)△△에 제작을 의뢰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현재 연구에 미사용된 재료비 1천만원 불인정
 -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함
 - (*) 사용 : 연구결과에 투입 또는 기여
- [사용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제4항]
-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
- 시작품제작비 불인정
 - ※ 수행기관 간 거래 불인정
-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제4항제5호]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4. 연구활동비

사례

- (주)○○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과 과제 수행 중 전문가 자문이 필요
- 동 대학의 타 과 교수인 홍길동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

- (주)○○는 참여연구원 홍길동의 출장비로 자체 규정에 따라 일비 및 식대를 정액으로 각 1만원씩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로 계상
- 홍길동은 출장 중 업체 관계자와 회의를 진행했으며, 회의비로 3만원을 연구개발비 계상(또는 업체 관계자가 회의비 3만원 부담)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수행기관 간 거래로 전문가활용비 불인정
 - ※ 연구수행기관 상호 간 지급된 전문가활용비 불인정(*)
 - (*) 허용 예외 : 비영리기관 상호 간 또는 비영리기관 내 전문가활용 시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소속 인력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혁신법 매뉴얼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 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 ✓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음

- 출장 식대 1만원 불인정
 - ※ 회의비로 계상한 금액은 출장비에서 관련 식대 차감
 - ※ 식대 제공받는 경우 출장비에서 관련 식대 차감

[혁신법 매뉴얼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함

4. 연구활동비

사례

- (주)○○는 연구실 냉난방을 위하여 냉방기 1대를 구매키로 계획하고 협약체결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함
- 연구기간 중 1대로는 부족하여 1대를 추가 구매하면서 당초 협약 시 냉방기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했으므로 별도의 협약 변경 승인신청하지 않음

- (주)○○의 홍길동 대리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확인하던 중 연구활동비 내 그 밖의 비용으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공공요금 등이 사용가능한 점을 확인
- 이에 회사에 부과된 전기세 및 공과금, 통신료 등을 연구활동비로 사용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추가 1대 해당금액 불인정
 - ※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변경(*) 시 사전 승인 필수
 - (*) 변경 범위 : 총 금액 증액, 품목 변경, 특정 품목 수량 증가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제1항제6호]

-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 ✓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 해당 전기세 및 공과금 등은 직접비가 아니므로 불인정
 - ※ 직접비 :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 가능 비용

[혁신법 매뉴얼 제2절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 ✓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 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 ✓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함

4. 연구활동비

사례

- (주)○○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X3년 10월1일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체결(사용계약 기간 6개월이며, 월 1백만원씩 6백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선지급)
- 연구개발기간은 X3.1.1~X3.12.31임

- (주)○○의 홍길동 대리는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회의 진행 중 회의비 식대로 11만원(공급대가)을 연구비카드로 사용
- 회사는 카드사용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받지 않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만원을 포함하여 11만원을 회의비로 신청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연구개발기간 이후 기간 사용료 3백만원 불인정
 -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금액 전액 계상 가능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제10항]

-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 매입부가가치세 1만원 불인정
 - ※ 실제 환급여부 불구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연구비 계상 불가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제4항 계상불가 항목]

-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5. 연구수당

사례

- (주)○○는 홍길동 대리는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까지 지급 가능하다는 규정을 확인
- 이에 연구개발계획서 예산으로 인건비 1억원 및 연구수당 2천만원을 편성
- 신규인력 채용이 지연되면서 인건비를 예산 1억원 중 6천만원만 사용하고 4천만원 잔액 발생
-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대로 2천만원 사용
- 연구개발기간은 X3.1.1~X3.12.31임

- (주)○○의 참여연구자는 왕옥심 책임자와 홍길동 대리 2명임
- 왕옥심 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을 위하여 기여도를 평가 (왕옥심 책임자 90%, 홍길동 대리 10%)
- 이에 (주)○○는 연구수당 2천만원 중 왕옥심 책임자에게 1800만원, 홍길동 대리 200만원 지급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연구수당 8백만원 불인정
- ※ 실사용 인건비의 20%까지 연구수당 사용 가능 (한도액 : 6천만원*20% = 1200만원)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제2항]

-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 ✓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연구수당 400만원 불인정
- ※ 특정 개인이 연구수당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개인별 한도액 : 2천만원*70% = 1400만원)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제6항]

-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수당

사례

- (주)○○는 연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직접비 현금 예산의 사용비율이 50%에 불과
-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한 2천만원을 전액 사용

- (주)○○는 홍길동 대리는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까지 지급 가능하다는 규정을 확인
- 이에 연구개발계획서 예산으로 인건비 1억원 및 연구수당 2천만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1억원 사용
- 정산결과에 따라 인건비 한도초과로 4천만원이 불인정되어 인건비 사용액 1억원 중 6천만원만 인정
- 연구수당은 당초 계획대로 2천만원 사용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연구수당 6백만원 불인정
 - ※ 직접비사용비율의 20%p 가산한 비율까지 사용 가능
(한도액 : 2천만원*(50%+20%) = 1400만원)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제7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연구수당 지급액} \times \left(\text{연구수당지급비율} - \frac{20}{100} \right)$$

- 연구수당 800만원 불인정
 - ※ 정산결과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까지 사용 가능
(한도액 : 6천만원*20% = 1200만원)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제7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5. 간접비

사례

- (주)○○는 연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직접비 현금 예산의 사용비율이 40%에 불과
- 간접비는 당초 계획한 2천만원을 전액 사용

- (주)○○는 홍길동 대리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 연구지원인력 김꼼꼼 행정원으로부터 간접비는 기관에서 일괄흡수하여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 간접비 예산 1천만원을 건별로 증빙하지 않고 자계좌이체로 회사로 일괄흡수

불인정 사유 및 관련 규정

- 간접비 1200만원 불인정
 - ※ 직접비 집행비율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도 해당 비율까지 사용 가능
(한도액 : 2천만원*40% = 800만원)

[혁신법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제5항제3호]

-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 ✓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간접비 총액} \times (\text{간접비 집행비율} - \text{직접비 집행비율})$$

- 간접비 1천만원 불인정
 - ※ 영리기관은 간접비 기관단위 통합관리 불가

[혁신법 매뉴얼 제12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 영리기관 :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비 관리
- ✓ 비영리기관 :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음

Contact Us

일신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정성우

대표 전화: 070-7835-3425

대표 E-mail: swjung@ilshincpa.com